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45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미성년자 등에 대한 지역가입자 연대납부의무 면제	3
2. 체납처분 사전통보서 발송 시 추가 안내	7
3. 천재지변 등 체납처분 유예 사유 규정	10

I. 개요

1. 허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4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22인
- (2) 제 안 일 : 2024. 7. 1.
- (3) 회 부 일 : 2024. 7.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인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81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미성년자 등에 대한 지역가입자 연대납부의무 면제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은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면제 대상을 전체 미성년자와 8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임산부 중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생략)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u>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u>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 ----- ----- ----- <u>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u> ----- -----.
<신설>	1. <u>미성년자</u>
<신설>	2. <u>80세 이상인 사람</u>
<신설>	3. <u>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u>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③ (생 략)	<u>에 따른 장애인</u> <u>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u> <u>따른 임신부</u>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7조¹⁾ 및 동법 시행령²⁾에 따르면 ①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② 연간 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의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이 없는 미성년자,

- 1)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차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중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③ 연간 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³⁾.

□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연대납부 의무 면제 대상을 현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서 확대하여 ① 전체 미성년자, ② 80세 이상의 노인,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임산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미성년자 전체 및 납부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⁴⁾.

□ 개정안은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지역가입자 연대납부 의무 면제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세대단위로 부과하고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미성년자 등을 제외할 경우 부모의 소득·재산을 미성년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여전히 보수 및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므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미성년자의 99.6%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함

4)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권고, 2019.8.22.

로,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미성년자와 직장가입자인 미성년자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의견

- 개정안은 소득·재산이 있어서 부담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및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사실상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 간 공정성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대납부면제 확대에 따른 보험료 수입의 감소가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게 될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가입자 중 8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는 약 133만 세대(전체 14.6%, '24.5월 기준)이며,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2. 체납처분 사전통보서 발송 시 추가 안내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험료등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생략)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6항-----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81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한 후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⁶⁾.

□ 개정안은 체납처분 사전통보서 발송 시 그 발송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발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사전통보서 발송 시 전화통화, 문자 전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실제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므로 법률 개정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의견

-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가입자의 연락처를 수집·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입자가 공단에 자발적으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시 안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안내절차 시행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3. 천재지변 등 채납처분 유예 사유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천재지변,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채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료 채납 관련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채납처분) ① ~ ⑦ (생략) <u><신설></u>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채납처분) ① ~ ⑦ (생략) <u>⑧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 및 제77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납처분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u> <u>1. 천재지변,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u> <u>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u> <u>3. 그 밖에 보험료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천재지변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피해 대상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7)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체납처분 유예 대상 보험료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6개월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 개정안은 이러한 취약계층 대상 체납처분 유예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대상자를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

7)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8)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제2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체납처분 유예 대상 보험료가 있는 자는 이 조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경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 등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조(유예 기간)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로 하고 그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천재지변 등 긴급한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및 재산이 감소한 가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은 현재 천재지변,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질병 또는 부상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취약계층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체납처분 유예 제도의 대상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가입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인바, 확대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보건복지부 의견

- “재산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등의 용어가 불분명하여 대상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며, 체납처분 유예 확대시 체납 증가 및 수입감소 등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3